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123
----------	-------

제출년월일 : 2019. 3. .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출산장려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 확대)** 출산장려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2019년 출생한 첫째아이와 둘째아이 이상부터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안 제 5 조)

(다만 2019년 출생한 넷째아까지만 개정 전 조례 적용하고 2020. 1월부터 둘째아 이상으로 적용)

현 행	확 대
첫째 아이 50만원 이내	첫째 아이 100만원 이내
둘째 아이 100만원 이내	둘째아이 이상 300만원 이내
셋째 아이 300만원 이내	
넷째 아이 이상 1,000만원 이내(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2019년 2월 통권제268호 보건복지포럼 자료 : 결혼한 여성(15세~49세) 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 기대 자녀수도 2명, 출생아수 1명(26.4%), 2명(53.3%)로 출산장려금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확대 필요

- **(출생축하금 신청자 확대 규정)** 출생축하금 신청 시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보호자에게도 신청 확대(안 제6조)
- **(지역화폐 지급 근거 마련)**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생 축하용품 지역화폐(모바일상품권 포함)지급 근거마련(안 제7조2제2항)
- **(다자녀 교복비 지원 조항 폐지)** 2019년 중·고생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의거 다자녀 교복비 중복지원 조항 삭제(안 제14조~제15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 마련)** 출산친화 사업장려 및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 민간단체 등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8조)

※ 2019년 2월 통권제268호 보건복지포럼 자료 : 2018년 전국 출산율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보면 계획자녀수는 2명이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및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응답여성의 82.7%로 긍정적인 생각이나 실제 출생아수는 1.75명으로 자녀 출산의 장애요인을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거하고 긍정적인 인식개선 필요

- **(포상 근거 마련)** 출산친화 및 지역사회 건강가정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함) 등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안 제19조)
- **(홍보물품 지원 근거 마련)**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각종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
- **(부칙 다소 수정)** 지원대상자 및 부 또는 모는 소급 신청 시 안산시 주민등록이 계속 되어 있어야 소급 지원함.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사전예고(결과) :** 붙임

○ 입법예고 : 2019. 2. 19. ~ 2019. 3. 4. (13일간)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4

## < 불임 1 >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출생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출산축하용품”을 “출생축하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
2.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3.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행사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출산장려금 등”을 “출생축하금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목 “(장려금 지원대상)”을 “(축하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의 제목 “(장려금 지원금액)”을 “(축하금 지원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이내”를 “100만원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이내”를 “300만원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장려금 지원중단)”을 “(축하금 지원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려금 신청)”을 “(축하금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장려금 지원방법)”을 “(축하금 지원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장려금”을 각각 “축하금”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출생축하용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축하용품”을 “출생축하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포함)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제4항 중 “출산축하용품”을 “출생축하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제5항 중 “출산축하용품”을 “출생축하용품”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첫 달까지 지급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뒤에 “제5장 보칙” 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업·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건강가정 조성과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포상)** 시장은 건강가정 육성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
3. 저출생 인식개선에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제20조(홍보)** ① 시장은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제20조 뒤에 “제5장 보칙” 을 삽입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 및 제22조(종전의 제19조)** 중 “장려금” 을 “축하금” 으로 각각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0조)** 중 “장려금” 을 “축하금” 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할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하였거나 입양된 지원대상자로 적용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일까지 출생하였거나 입양된 지원대상자에 대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급 신청한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관 실·과		여성가족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담당·팀장 직위·성명	출산지원팀장 이미령
	담당자 성명·전화	오건순 (행정 260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일반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 유아학비	아기 이름		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영유아(0~2세)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영유아(0~2세)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산후조리비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지원가능) <input type="checkbox"/> 출생일 :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내 시·군 전입일 :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아동수당 (아동수당법에 의거 지원)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부가 장애인인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생 및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경감(전 출산가정)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경감(고객명 : , 납부자 번호 : ) <input type="checkbox"/> 상하수도 요금 감면 <input type="checkbox"/> 출생축하용품 <input type="checkbox"/> 출생 축하금( 째)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영유아 양육비 <input type="checkbox"/> 안산행복플러스 카드(다자녀, 임신부)(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이용 요금 등 감면) - 차량등록(2대까지 가능) : 차주 : / 차량번호 : , 차주 : / 차량번호 :					
	성명( )		성명( )		성명( )	
	사진1		사진1		사진1	
구분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input type="checkbox"/>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input type="checkbox"/> 출생사실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3. 차량등록증(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자 중 차량소유자)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1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 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보호자(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질 양육하는 보호자)

#### 유의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축하금이 지원 중단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 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식 참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협약한 관계기관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7. 출생관련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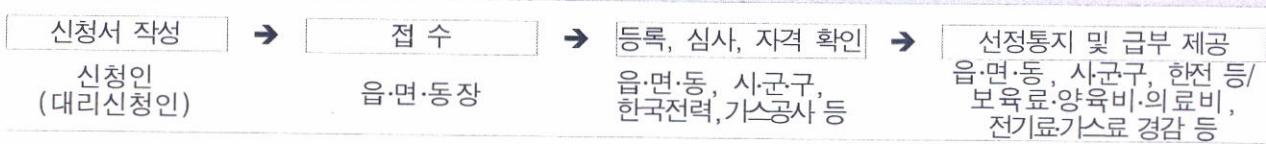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다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생 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입금 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 중 째				
확인사항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확인)	출생 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거주 기간	부모 학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학교 명	학교 학년				
	지원 여부	지원( ), 제외(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대장**

연번	가구주 성명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구분 (신규/재발급)	동명	주소	차량 번호	연락처	유효기간

[별지 제10호 서식]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대장**

연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구분 (신규/재발급)	동명	주소	차량 번호	연락처	출산 예정일	유효기간

[별지 제11호 서식]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발급 회수 및 폐기 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회수(반납)일자	반납사유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회수 및 폐기 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회수(반납)일자	반납사유	비고

< 불임 2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p>	<p>2. "출생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 ----- ----- ---.</p>
<p>3. · 4. (생 략)</p>	<p>3. · 4. (현행과 같음)</p>
<p>5. "다자녀 교복비" (이하 "교복비"라 한다)란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복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p>	<p>5. &lt;삭 제&gt;</p>
<p>6. (생 략)</p>	<p>6. (현행과 같음)</p>
<p>7. '출산축하용품' 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p>	<p>7. '출생축하용품' 이란 ----- ----- -----.</p>
<p>8. (생 략)</p>	<p>8.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9.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p>
<p>제3조(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p>	<p>제3조(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p>

한다)은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 제2장 출산장려금 등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의 첫째 아이상인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된 자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장려금 지원금액) ①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 아이는 50만원이내
2. 둘째 아이는 100만원이내
3. 셋째 아이는 300만원이내
4. 넷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이내(매년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

2.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3.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행사 및 홍보 물품 제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장 출생축하금 등

제4조(축하금 지원대상)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① 축하금-----  
-----  
-----.

1. ----- 100만원이내

2. ----- 300만원이내

<삭 제>

<삭 제>

##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넷째 아이 이상인 경우 지원금은 신청한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청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5조의2(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1. · 2. (생 략)

제6조(장려금 신청) ① 시장은 출생 신고 시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일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하여야 한다.

### <신 설>

제7조(장려금 지원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제7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

## <삭 제>

제5조의2(축하금 지원중단) -----  
-----축하금-----  
-----.

###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축하금 신청) ① -----  
-- 축하금 -----  
-----축하금-----  
-----.

② 축하금-----  
-----  
-----.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  
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축하금 지원방법) ① -----축하금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축하금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출생축하용품 -----  
-----

정으로 한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금액 및 지원용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출산축하용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동장은 출산축하용품 지급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량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양육비) ① (생 략)

② 양육비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교복비) ① 교복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교복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관내에 거

-----.  
②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포함)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출생축하용품 -----

-----. 다만,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출생축하용품 -----  
-----  
-----  
----.

제8조(양육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만 6세 생일 이 도래하는 첫 달까지 지급한다.

<삭 제>

주하지 않는 경우,

제15조(교복비 지원방법) ① 교복비는 동·

하복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액의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복비 지원은 2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신 설>

<삭 제>

제18조(기업·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건강

가정 조성과 지역사회의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9조(포상) ① 시장은 건강가정 육성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
3. 저출생 인식개선에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신 설>

제20조(홍보) ① 시장은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18조(환수 등) 시장은 장려금, 양육비 및 학자금 등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지급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입양수당을 포함한다),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양육비 및 학자금 등 지원 관련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1조 (생 략)

제21조(환수 등) ----- 축하금-----  
-----  
-----  
-----  
-----  
-----  
-----  
-----  
-----.

제22조(중복지원 금지) -----  
----- 축하금-----  
-----  
-----  
-----  
-----.  
-----  
-----  
-----  
-----.

제23조(대장 등 비치) -----  
----- 축하금-----  
-----  
-----.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할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생 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입금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	( )
예금주 (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증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한(당장자 확인사항)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 중 째			
출생 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신청일 거주부 모 기간 학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학교명	학교	학년		
지원여부	지원( ), 제외(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행정정보의 공통이용 시설등의	신청인은 이 건 학제적 학교 관할구역 '한지장로교회'에 따른 통장발표와 충동 등을 통하여 달달동주민이 기증한거점장에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과 등 민족사항 및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달달동주민이 통장한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제출하십시오. ※ 같은 가족정보는 한년 동안 보유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생 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입금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	( )
예금주 (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증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한(당장자 확인사항)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 중 째			
출생 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신청일 거주부 모 기간 학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학교명	학교	학년		
지원여부	지원( ), 제외(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행정정보의 공통이용 시설등의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집합장류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통장발표와 충동 등을 통하여 달달동주민이 확인한거점장에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과 등 민족사항 및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달달동주민이 통장한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제출하십시오. ※ 같은 가족정보는 한년 동안 보유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 설>

## [별지 제9호 서식]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대장

연번	가구주 성명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구분 (신규/재발급)	동명	주소	차량 번호	연락처	유효기간

## <신 설>

## [별지 제10호 서식]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대장

연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구분 (신규/재발급)	동명	주소	차량 번호	연락처	출산 예정일	유효기간

## <신 설>

## [별지 제11호 서식]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발급 회수 및 폐기 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회수(만년)일자	만남사유	비고

## <신 설>

## [별지 제12호 서식]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회수 및 폐기 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회수(만년)일자	만남사유	비고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123
----------	-------

제안년월일 : 2019. 4. 2.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생지원금 등의 수정

### 주요골자

- 둘째아이이상부터 300만원 축하금 지원 (안 제5조제1항제2호)
- 출산장려를 출생 장려로 용어조정 (안 제19조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아이는” 을 “아이 이상은” 으로 한다.

안 제19조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출산장려” 를 각각 “출생장려” 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①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둘째 <u>아이는</u> 300만원이내</p> <p>② &lt;삭 제&gt;</p> <p>제19조(포상) ① 시장은 건강가정 육성 및 <u>출산장려</u>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장려와 지역사회의 <u>출산장려</u>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① -----</p> <p>-----</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u>아이 이상은</u> -----</p> <p>제19조(포상) ① ----- <u>출</u>  <u>생장려</u>-----</p> <p>-----</p> <p>1. (원안과 같음)</p> <p>2. ----- <u>출생장려</u> -----</p> <p>-----</p> <p>3. (원안과 같음)</p>